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 14) 상정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김 태 산)

□ 제안이유

- 재단 상임이사가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0. 11. 8.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변경된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단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원사항 중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포함)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7조제3항 개정)

다. 상임이사 임명, 업무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8조제1항,제2항 개정)

라. 임원의 임기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11조 제1항 개정)

마. 설치 및 구성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13조 제2항 개정)

바. 임원의 보수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27조 개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안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원) ①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3.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업무 통할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①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